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설명자료

2024. 1.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설정 배경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 시행된 후 양형통계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음
 - 스토킹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과 실무상 필요성이 높음
 - 벌금형 선고 비율이 약 45%에 이룸 ⇨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 존재
-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 스토킹처벌법이 2023. 7. 11. 일부 개정되었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같은 날 시행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
 - 정의 규정에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

서 형벌로 변경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 설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자유형 및 벌금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3. 9. 18. 제127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3. 11. 10. 제128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 2024. 1. 8. 제129차 및 2024. 1. 18. 제129-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 유예 기준) 및 설정안 의결
- 2024. 1. ~ 2024.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4. 2. 16.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4.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이하 여백)

II.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고려 사항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으로 포함

2. 설정 범위에 포함된 범죄

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및 제2항(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 범죄임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충분한 실무례가 축적되어 있음

나.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잠정조치 위반)

-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실무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발생 빈도 역시 적지 않음
- 잠정조치 위반 범죄는 후속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커 후

속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고, 범죄 자체의 죄질도 가볍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큼

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위반)

- 2023. 7. 11. 법률 개정으로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전환
- 법정형이 잠정조치 위반죄보다는 낮지만, ① 잠정조치 위반죄와 행위 태양이 동일(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위반)하여, 양형인자를 공통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잠정조치 위반죄와 법정형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비록 양형 실무례가 없어도 규범적 판단에 의한 형량범위의 설정이 가능하며, ③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실익이 큼

(이하 여백)

III.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형 분류안

가. 논의의 전제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유형 분류안

▣ 개요

- 죄질과 법정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등 위반이라는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

▣ 대유형 1(스토킹범죄)

- 대유형 1 ‘스토킹범죄’의 소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① 일반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②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분류함

■ 대유형 2(잠정조치 등 위반)

- 대유형 2 ‘잠정조치 등 위반’의 소유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① 긴급응급조치 위반(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잠정조치 위반(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분류

다. 소결

01 ¹ 스토킹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2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02 ¹ 잠정조치 등 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2	잠정조치 위반			

(이하 여백)

IV.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1. 고려사항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형종 선택의 기준 설정 방식

-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권고 영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
- 양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법관의 합리적 양형재량 보장을 위하여 서술식 기준을 추가 제시
- 구체적 기준
 - 자유형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또는 금고) 3년을 초

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되, 법정형,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당해 범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권고
- 가중영역에 해당하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
- 특정 형종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양형실무상 형종 선택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형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액 산정 방법

- 입법 실무는 법정형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용 이를 기준으로 하되, 범죄의 종류와 죄질, 양형통계 등을 반영하여 적절히 가감하는 방법으로 설정

2. 스토킹범죄(대유형 1)

가. 일반 스토킹범죄(소유형 1)

1)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량 분포¹⁾ 등

1) 이하 스토킹범죄 관련 통계는 모두 2022. 1. 1.부터 2023. 3.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양형위원회 운영지

▣ 징역형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 (월)
	2	3	4	5	6	8	10	12	16	18	24		
수	3	1	26	3	100	63	32	25	1	5	2	261	7.69
비율	1.1	0.4	10.0	1.1	38.3	24.1	12.3	9.6	0.4	1.9	0.8	100.0	

- 평균형량은 7.69월이고 최빈값은 6월(38.3%)임
- 최하한은 2월, 최상한은 24월임
- 6~12개월이 84.3%임

▣ 법정형(징역 3년↓) 동일 범주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재물손괴 등(700 ↓)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일반협박(500 ↓)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주거침입(500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일반유기학대 중 일반유기(500 ↓)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개인정보부정취득 등(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위치정보법)(3,000 ↓)	- 6월	4월 - 1년	8월 - 2년
채권추심법위반(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3,000 ↓)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 벌금형

단위: 명, %

	벌금(만 원)																	전체	평균 (만 원)
	30	50	80	100	12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수	1	3	1	35	0	3	44	4	68	8	41	0	8	2	1	3	1	223	319.33
비율	0.4	1.3	0.4	15.7	0.0	1.3	19.7	1.8	30.5	3.6	18.4	0.0	3.6	0.9	0.4	1.3	0.4	100.0	

원단 제공)

- 평균형량은 319.3만 원이고 최빈값은 300만 원(30.5%)임
- 최하한은 30만 원, 최상한은 2,000만 원임

▣ 법정형(3,000만 원 이하) 동일·유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1000 ↓, 3000 ↓)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500-3000, 1000 ↓, 3000 ↓, 5000 ↓)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600 ↓, 1000 ↓, 300-2000, 3000 ↓)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500-3000)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위험운전 치상(1000-3000)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어린이 치상(500-3000)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치상 후 도주(500-3000)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3)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스토킹범죄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징역형

- 감경영역의 상한은 법정형이 동일한 다수 범죄의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8월로 설정함
- 평균형량 7.69월과 최빈값 6월 및 선고 건수 중 84.3%를 차지하는

6~12개월이 기본영역에 포섭될 수 있도록 설정함

- 법정형 상한이 3년이고, 양형 통계 중 가장 높은 형량이 징역 2년이나,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은 법정형 동일 범죄의 양형기준보다 높게 상한을 2년6월로 설정함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법정형 상한인 3년까지 권고

■ 벌금형

- 법정형(3,000만 원↓),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범위, 벌금형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되, 양형통계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함
- 감경영역의 하한은 100만 원, 상한은 1,000만 원으로 설정함
 - 감경영역에 전체 선고 건수의 97.5%를 포섭할 수 있음 ▶ 통상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함
- 기본영역의 경우, 양형 통계 중 가장 높은 형량이 벌금 2,000만 원인 점, 법정형 상한(3,000만 원)을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설정

■ 형종 선택의 기준

- 권고영역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의 선택을 권고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권고 형량이 높지 않고 벌금형으로도 책임에 비례한 형벌 부과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도 권고함

-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양형실무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있는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벌금 선택이 가능하게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양형재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등에도 예외적 벌금형 선택 권고에 대한 서술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도 고려
- 서술식 기준 내 벌금형의 범위는 영역 간 중첩을 허용하도록 설정함(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설정). 일반 스토킹범죄 가중영역의 경우 교통범죄와 마찬가지로 2개 이상 특별가중인자 존재에 따른 예외 배제 규정을 둠(가중영역의 특성)

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소유형 2)

1)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량 분포 등

▣ 징역형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월)
	4	8	10	12	24		
수	1	7	1	3	1	13	10.00
비율	7.7	53.8	7.7	23.1	7.7	100.0	

- 평균형량은 10월이고, 최빈값은 8월(53.8%)임
- 최하한은 4월, 최상한은 24월임
- 8~12월 사이에 84.6%가 분포함

▣ 법정형(징역 5년↓) 동일 범주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체포·감금(700 ↓)	- 8월	6월 - 1년	8월 - 2년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1,000 ↓)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위계공무집행방해(1,000 ↓)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일반강요(3,000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권리행사방해(700 ↓)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특수폭행(1,000 ↓)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업무방해(1,500 ↓)	- 8월	6월 - 1년6월	1년 - 3년6월
건설 입찰방해(2억 ↓)	6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4년
미등록 대부업 등(5,000 ↓)	- 10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채권추심업법위반(폭행, 협박 등 행위)(5,000 ↓)	- 8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특수손괴 등(1,000 ↓)	- 8월	6월 - 1년2월	8월 - 2년
특수주거침입 등	- 10월	6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벌금형 선고사례(3건²⁾)

- 사례1(서울남부 2021고단****): 벌금 500만 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연인 / 일반 스토킹범행(접근 3회, 문자메시지 전송 12회) + 휴가등휴대 스토킹범행(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차량 손괴)
- 양형인자 : 죄질 불량 / 범행 단기간 / 처벌불원

- 사례2(인천 2023고단****):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학교 동급생인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장소에 찾아가고, 마지막 범행일자에는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소량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사안임

2) 2023. 4. 이후 선고된 2건을 포함한 것임

■ 양형인자 : 죄질 불량 / 자백 / 처벌불원 / 맥주병으로 폭행 의도 아님

● 사례3(안산 2023고단****):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연인임 /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다가, 피해자가 현재 연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간 뒤,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임

■ 양형인자 : 자백 / 처벌불원

■ 법정형(5,000만 원 이하) 동일·유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500-3000, 1000 ↓, 3000 ↓, 5000 ↓)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2000 ↓, 5000 ↓)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300-5000, 500-5000, 500-7000)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3)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8월 - 1년6월	1년 - 3년6월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한다).

■ 징역형

- 양형 통계는 적으나,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존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함에는 한계가 있음
- 법정형(5년 ↓), 채권추심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등 법정형이 동일

한 범죄 및 흉기휴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수범죄가 존재하는 범죄(특수폭행, 특수손괴 등, 특수주거침입 등)의 형량범위,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범위(안)를 고려함

- 평균형량 10월과 최빈값 8월 및 선고건수 중 84.6%를 차지하는 8~12월이 기본영역에 포섭될 수 있도록 설정함
-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형량범위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을 고려하여 하한은 1년, 상한은 3년 6월로 설정함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법정형 상한인 5년까지 권고

■ 벌금형

- 양형사례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형(3,000만 원↓), 일반 스토킹 범죄의 형량범위(안) 및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의 형량범위, 벌금형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설정함

■ 형종 선택의 기준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가중영역의 경우,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의 특수성과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위험성,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자유형의 선택만 권고함
- 기본영역의 경우, 양형실무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벌금 선택이 가능하게 하

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양형재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 벌금형 선택 서술식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 낮은 흥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기본영역에도 벌금형 선택 서술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설정)
- 서술식 기준 내 벌금형의 범위는 영역 간 중첩을 허용하도록 설정함

3. 잠정조치 등 위반(대유형 2)

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소유형 1)

1)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량 분포 등

▣ 실무례 부존재

- 긴급응급조치 위반죄는 2023. 7. 1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범죄로서 실무례가 존재하지 않음(구법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이었음)
- 잠정조치 위반죄와 행위 태양이 동일하고, 법정형이 잠정조치 위반죄의 1/2에 해당 ➡ 잠정조치 위반죄의 형량범위를 참작하여 규범적 판단에 의한 형량범위 설정이 필요함

▣ 법정형(징역 1년↓) 동일 범주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1,000 ↓)	- 6월	4월 - 8월	6월 - 1년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일반 모욕(200 ↓)	- 4월	2월 - 8월	4월 - 1년
무면허운전(300 ↓)	-	- 8월	6월 - 10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500 ↓)	-	- 8월	6월 - 10월

▣ 법정형(1,000만 원 이하) 동일·유사 범주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당내경선 관련 매수 (1000 ↓, 3000 ↓)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500-3000, 1000 ↓, 3000 ↓, 5000 ↓)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기부행위 (500 ↓, 1000 ↓)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600 ↓, 1000 ↓, 300-2000, 3000 ↓)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2호 음주운전 (500-1000)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3)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긴급응급조치 위반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 징역형

- 감경구간에도 징역형 권고 형량을 제시하기로 함. 감경구간에 징역형을 권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 범행 초기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계속될 수 있는 범행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인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도주, 모욕죄의 경우도 감경구간에 징역형을 설정하고 있음
- 2023. 7. 법률 개정 이전에 과태료에 불과하였으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 개정사유도 고려할 필요 있음
- 법정형이 동일(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죄의 형량범위 참작

■ 벌금형

-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 비례관계, 법정형이 벌금 1,000만 원 이하인 점,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의 형량범위 및 형이 더 무거운 잠정조치 위반죄의 형량범위(안)와의 형평, 구법상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등도 두루 고려함
- 감경영역은 하한 100만 원, 상한 300만 원으로 설정함
 -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법정형이 선거범죄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감경영역 30만 원 - 90만 원)보다 더 가벼우나, 이는 선거범죄의 특수성(벌금액수에 따른 당선무효효력)을 감안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의 하한은 100만 원으로 더 높게 설정함
- 기본영역은 하한 200만 원, 상한 600만 원으로 설정함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가장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고,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과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라는 점에서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 중 가중영역에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 그 상한을 모두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은 1,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하한은 감경영역의 상한을 고려하여 500만 원으로 설정함

▣ 형종 선택의 기준

- 별도의 서술식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개정 전 과태료 사안이어서 특정 양형요소에 따른 형종 선택 기준(벌금형 또는 징역형 권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 결국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형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나. 잠정조치 위반(소유형 2)

1) 유형의 정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형량 분포 등

▣ 징역형

단위: 명, %

	형량(월)											전체	평균 (월)
	2	3	4	5	6	8	10	12	16	18	24		
수	1	0	7	0	13	7	1	2	0	0	1	32	6.94
비율	3.1	0.0	21.9	0.0	40.6	21.9	3.1	6.3	0.0	0.0	3.1	100.0	

- 평균형량은 6.94월이고, 최빈값은 6월(40.6%)임
- 최하한은 2월, 최상한은 24월임
- 6월~1년 사이에 71.9%가 분포함

▣ 법정형(징역 2년↓) 동일 범주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폭행(500↓)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일반 경매·입찰방해(700↓)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일반유기·학대 중 학대(500↓)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공문서 등 부정행사(500↓)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과실치사(700↓)	- 8월	6월 - 1년	8월 - 2년
통신매체이용음란(2,000↓)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벌금형

단위: 명, %

	벌금(만 원)																전체	평균 (만 원)	
	30	50	80	100	12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수	0	0	0	4	1	1	4	0	5	0	1	1	1	0	0	0	0	18	265.00
비율	0.0	0.0	0.0	22.2	5.6	5.6	22.2	0.0	27.8	0.0	5.6	5.6	5.6	0.0	0.0	0.0	0.0	100.0	

- 평균형량은 265만 원이고, 최빈값은 300만 원(27.8%)임
- 최하한은 100만 원, 최상한은 700만 원임

▣ 법정형(2,000만 원 이하) 동일·유사 범주의 권고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2000 ↓, 5000 ↓)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600 ↓, 1000 ↓, 300-2000, 3000 ↓)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교통사고 치상 (2000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교통사고 치사 (2000 ↓)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1호 음주운전 (1000-2000)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년6월 - 4년
음주측정거부 (500-2000)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3)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잠정조치 위반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징역형

- 평균형량 6.9월과 최빈값 6월 및 선고건수 중 71.9%를 차지하는 6월~1년이 기본영역에 포섭될 수 있도록 설정함
- 잠정조치 위반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스토킹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

■ 벌금형

- 법정형이 벌금 2,000만 원 이하인 점, 형량 분포,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일반 스토킹범죄의 형량범위(안)과의 형평, 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의 하한은 100만 원, 상한은 7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양형 통계 100% 포섭
- 기존 실무례 중 가장 무거운 형이 700만 원이나,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의 하한은 300만 원, 상한은 1,500만 원으로 설정함
 - 최빈값 300만 원이 기본영역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한을 300만 원으로 설정함

■ 형종 선택의 기준

- 잠정조치 위반도 법정형이 비교적 낮고, 양형실무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게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양형재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되, 처벌불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서술식 기준을 두고, 이 경우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정함

(이하 여백)

V.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 스토킹범죄(대유형 1)³⁾

가. 특별가중인자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스토킹범죄의 특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2)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스토킹범죄의 특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스토킹범죄로 의율되는 사안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다른 유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양형인자에 대하여는 논의가 공통됨

3)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정의규정에 ‘혐오감’을 추가하여 혐오범죄가 가중인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과의 균형을 고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과 같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포함되도록 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연령, 장애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정의규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변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이사, 이직, 영업포기 등을 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범행으로 인하여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 동거인, 아동 등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7)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집착적 성향이 표출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재범한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음.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제정되기 전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특정인에 대한 집착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정하고, ‘동종 전과’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사이버 스토킹)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를 폭넓게 포함시켜 해당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가중사유로 반영되도록 함
- 정의규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스토킹범죄,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범죄 및 동일 피해자 대상 살인미수범죄, 폭력범죄, 감금·학대범죄, 주거침입범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업무방해범죄, 방화범죄, 무고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나. 특별감경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폭력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다른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다른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수의 양형실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음

- 교제 시 대여한 금전 변제를 독촉한 것이 발단이 된 사안, 층간소음 자제 메시지를 부착한 사안,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사안, 피고용인인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하여 범행한 사안,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로서 전 배우자에게 태아보험 인수해 줄 것을 독촉하면서 범행한 사안 등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무변제 독촉, 재산분배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침입범죄, 업무방해범죄, 폭력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실무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4)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범행에 따른 결과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스토킹범죄로 의율되는 사안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나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미한 사안을 감경영역에 포섭시킬 수 있도록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것이 타당함

5) 청각 및 언어장애인/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6)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⁴⁾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	------	-------------------------	-------------------------

		참작사유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 아동학대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또는 정신을 침해한 범죄로 구성요건이 무척 넓은데,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협박죄, 체포·감금죄, 권리행사방해범죄 등은 모두 1-1 유형에 해당함

4) 2021. 8. 17. 제111차 양형위원회,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

- 1-2는 개인적 범익에 관한 범죄 중 처벌불원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범죄군이므로, 스토킹범죄는 1-1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피해 회복 관련 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 ‘처벌불원’의 정의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
 -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다른 범죄군의 정의규정에 들어가 있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이라는 문구는 스토킹범죄에서 재산적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일반가중인자

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므로, 합의 시도 중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2)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 특별가중인자[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상

응하도록 일반가중인자를 규정하고, 가중사유가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도 일치시킴

라. 일반감경인자

1)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양형기준에는 주취 등 범죄 관련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서술식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이 스토킹범죄에도 들어가는 점 고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잠정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진지한 반성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참작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 양형기준 설정·변경 시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을 고려하면, 위 정의규정에서 설명하

는 정도의 ‘진지한 반성’ 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한 것은 적절

- 개별 스토킹범죄의 기간·수범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위 정의규정에 포섭 가능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
- 정의규정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라는 행위자 요소를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양형기준 설정·변경시 행위자 요소인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을 고려하도록, 제7호는 ‘범죄 전력’ 을 고려하도록 각 규정한 것에 비추어, 현행 양형기준에서 정의규정으로 제한한 의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일반감경인자로 두는 것은 적절
- 정의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상당한 피해 회복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 개념임
-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음

2. 잠정조치 등 위반(대유형 2)

가. 개요

- ▣ 기존 실무례에서 대부분 스토킹범죄의 양형인자를 공유함
 - 스토킹범죄와 함께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다수임
 - 잠정조치 위반 단독범죄의 경우에도 스토킹범죄 양형인자와 대부분 유사함
 -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경우 실무례 존재하지 않음
- ▣ 스토킹범죄 양형인자를 참조하되,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특성을 고려함
 -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의 공권적 조치에 위반 →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
 - 행위 태양(스토킹행위)에 따른 피해 및 피해자 존재 → 개인적 법익 침해

나. 특별가중인자

1)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특성, 양형실무 등을 고려할 때,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잠정조치 위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제외함

2)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실제 피해 정도도 달라질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나 가벌성이 중한 사안을 가중영역에 포섭시킬 수 있도록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두는 것이 타당함

다. 특별감경인자

1)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협박범죄, 주거침입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두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구체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가 뒤따르는 것이므로, 국가·사회적 법익 외에도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존재함
-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합의 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서 2-1군에 포함
-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음

3. 양형인자표

가. 스토킹범죄(대유형 1)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중 누범

나. 잠정조치 등 위반(대유형 2)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이하 여백)

VI.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1. 스토킹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잠정조치 등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하 여백)